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재활용법안

검 토 보 고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4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8
(3) 총괄 의견	10
2. 주요 조문별 검토	13
(1) 총칙	13
(2)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검사 절차	23
(3) 선박재활용 절차	29
(4)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감독	39
(5) 보칙	48
(6) 벌칙	53
(7) 부칙	56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0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202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1)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처리하는 과정(이하 “선박재활용”이라 한다)¹⁾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한다)을 채택(첨부1 참고)하였고, 동 협약은 2025. 6. 26.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조건 및 현황

발효 조건	국제협약 제17조(협약의 발효) 이 협약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는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된다 1.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해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필요한 문서를 기탁한다. 2. 1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상선 선박량의 합계가 세계 상선 선박량 총톤수의 40% 이상이다. 3. 1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지난 10년 간 합계 연간 선박재활용 실적의 최대치가 동 국가들의 상선대 총톤수의 3% 이상이다.
현황	협약은 2023. 6. 26.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2025. 6. 26. 발효 예정

1) 「선박재활용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박재활용”이란 유해물질에 주의하여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도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재활용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²⁾

□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관리강화는 첫째, 유해물질목록 관리를 통해 선박의 건조 및 운항 시에 선박의 안전과 운항효율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선박에 탑재된 유해물질을 무해물질로 대체하는 것에 둘째, 선박 재활용시설에서 선박의 해체작업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선박이 운항수명을 다하는 등의 사유로 폐선을 할 때 그 재활용 과정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문제 등이 제기된바, 이러한 점의 해소가 목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음.

2) 관계부처(외교부) 협의('24.6.) → 협약문 확정('24.12.) → 법제처 심사('25.3.) → 차관/국무회의/대통령 재가('25.4.) → 국회 동의('25.5.) → 가입서 기탁('25.5.) → 협약·발효('25.6.)

[표] 2023년 국가별 선박재활용 현황³⁾

구분	총톤수(Gross Tonnage ⁴⁾)	비율(%)
방글라데시	3,419,191	45.7
인도	2,465,566	33.0
튀르키예	529,805	7.1
파키스탄	371,112	5.0
그 외 지역	688,814	9.2
전 세계	7,474,488	100

- 2023년 국가별 선박재활용 현황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및 인도가 전 세계 선박재활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인도·방글라데시 등의 선박재활용 현장에서 사망자 447명, 부상자 393명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유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⁵⁾

□ 이에 제정안은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관리 등의 사항을 반영한 국내법 제정을 통해 협약을 준수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선박 운항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임.

3) 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누리집, 2024년 6월 5일 현황 게시 통계

4) 해당 국가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재활용(폐선) 처리된 선박의 총톤수 합산량

5) Berger, A. (2023, Nov. 17). Death, Injury and Disease. Equal Times. <http://www.equaltimes.org>

[표] 선박재활용협약 주요 내용

- 선박은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은 후 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함
 - * 신조선은 협약 발효 이후 즉시 적용, 현존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후부터 적용
-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의 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 가능
-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그 당사국의 검사관이 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선박재활용법안’의 제명으로 6장 3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 검사 절차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및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선박재활용법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국가의 책무)
	제2장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제8조(유해물질목록) 제9조(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등) 제10조(정기검사) 제11조(임시검사) 제12조(최종검사) 제13조(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14조(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의 발급) 제15조(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 제16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 제17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18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 등) 제19조(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4장 감독 제20조(출입검사 등) 제21조(항만국통제) 제22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3조(보고 의무 등)
	제5장 보칙 제24조(검사 등의 대행) 제25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26조(수수료) 제27조(선박재활용 실태조사) 제28조(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32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유해물질목록의 확인)

(3) 총괄 의견

□ 제정안은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용하는 한편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 선박재활용협약과 제정안의 관계

적용대상	협약의 주요내용	제정안	유사 국내법
일반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및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적용	안 제3조(적용범위)	없음
선박	유해물질목록 선박에 비치	안 제8조(유해물질목록)	없음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발급·비치	안 제10조(정기검사)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급	안 제12조(최종검사)	
시설	- 선박재활용시설 사용계획서 -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안 제16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 신고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안 제19조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선박해체 신고
	사람의 건강,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 수립·이행	안 제16조, 안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유해물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거	안 제16조, 안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해체·제거)

□ 협약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유럽 집행위에서는 2020.12.31.부터 협약에 준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 건조되는 선박 및 유럽 지역에 기항하는 선박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미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협약 내용에 대한 국내 법제화 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⁶⁾

□ 다만, 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법과의 관계 측면에서 제정안의 선박재활용 계획과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 신고 관련하여 두 법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각 제도의 목적,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둘째, 법률안의 체계와 관련하여 이 법은 크게 ①선박이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와 ②선박재활용시설이 선박재활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선박검사 및 선박재활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조문 순서와 체계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셋째, 제재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수단이 없어 제재 규정을 둘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6조

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음.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의미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넷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과 관련하여 인증의 기준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일부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외 유해물질 정의(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 적용 범위(안 제3조), 선박검사 명칭(안 제12조) 등과 같은 일부 조문의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

1) 목적과 정의 규정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선박’, ‘선박소유자’, ‘유해물질’ 및 ‘선박재활용’ 등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장비가 해체되거나 예인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현존선”이란 신조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3. “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25년 6월 26일 이후에 선박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이후에 있는 선박 다. 2027년 12월 26일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4. “충돈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충돈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충돈수를 말한다.
5.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용선자

나. 선박재활용시설에 선박을 매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선박을 소유하는 자

6.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유해물질목록”이란 선박 및 선박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8. “선박재활용”이란 유해물질에 주의하여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도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선박재활용업자”란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임차인을 포함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재활용에 대한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그 밖에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10. “선박재활용시설”이란 선박재활용을 위한 장소, 작업장, 시설로서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현장조사”란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명시된 선박재활용시설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13. “유조선”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속서 1에서 정의한 석유를 산적운반하는 유조선 또는 부속서 2에서 정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목적) 안 제1조에서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및 폐선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재활용 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국제협약의 시행과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목적 규정에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시행을 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유사 입법례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약의 시행 및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함이라고 법의 목적 규정에서 밝히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안 제2조는 선박재활용협약 제2조 및 부속서 제1규칙에서의 용어 정의를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것을 “유해물질목록”으로 정의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용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선박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관리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의규정에서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만, 협약에 의할 때 유해물질은 그 유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 규제의 정도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의규정에서 반영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제정안은 이와 같은 정의규정과 별도로 안 제7조에서 구체적인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의무사항을 두고 있는데, 정의규정 안 제2조 제6호에서 유해물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안 제7조에서 다시 유해물질에 대해 대통령령에 재차 위임하고 있어 관리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있는 양 조문 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문 간 혼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표] 관련 조문

안 제2조제6호	안 제7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누구든지 선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을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3조는 동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국제협약과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국가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대한민국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

23조, 제25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해양사고로 인하여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등이 발생한 경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해당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 시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 국제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국가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에 의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 및 제거하고,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선박 안전, 사람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기여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준하여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는 국제협약 제3조제3항과 부속서 제2규칙에서 정한 것을 참고하여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①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 ②외국선박으로서 500톤 이상인 선박이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기준을 500톤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정안의 적용대상으로 관리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선박의 규모는 690척 정도임.

[표] 적용범위 관련 적용대상 선박 현황⁷⁾

구분	현존선	척수
500톤미만	내항선	6,643
	외항선	147
500톤이상	내항선	978
	외항선	692

한편, ①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②군함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③해양사고로

7)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통계 자료(2025.1.17. 현황)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등이 발생하여 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해당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일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⁸⁾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제정안의 적용범위 조항은 외국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 작성, 선박 검사,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규정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안 제25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는 외국선박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므로 제외 규정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 제정안 적용 범위 정리

구분	적용 범위	적용 제외	비고
국내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 시설	①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②군함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③해양사고로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등이 발생하여 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해당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도 적용 제외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외국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경우	제8조제1항(유해물질목록 작성 및 검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정기검사, 임시검사, 최종검사), 제23조(보고 의무), 제25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 제외	안 제25조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해당 외국 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간주

8) 특히 연구선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는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의 처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국제협약과의 관계) 안 제5조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라는 협약의 정식 명칭을 밝히면서 내용이 국제협약과 다른 경우 국제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협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제협약보다 이 법안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 되도록 하였음.

- 유사 입법례로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경우에도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법에서 강화된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가의 책무) 국제협약 제1조제1항에서 선박재활용 시 선박안전, 사람 건강 및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바 안 제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및 선박재활용 기술과 관련한 국제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준하여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당사국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검사 절차

가. 제정안의 내용

- 본 제정안 제2장의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선박의 유해물질 규제와 유해물질목록 작성,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임시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선박에는 유해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에 대해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안 제8조).

다음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발급하며, 선박소유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함(안 제10조).

선박소유자가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 및 설비를 변경·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결과를 기재하게 됨(안 제11조).

제 정 안
제2장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누구든지 선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을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목록)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제6호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의 모든 운항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 및 설비를 변경·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14조(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의 발급) ①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을 받으려는 경우,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 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로 본다.

제15조(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재활용 계획상 시작일 전 30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을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재활용할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가 발급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의 시작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박재활용업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이 완료된 경우,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국제협약 부속서 제4규칙은 부록1에 명시된 유해물질의 설치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7조는 선박에 유해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을 설치·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이를 보다 상세히 보면 협약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소화비페닐(PCB), 유해방오도료 등이 있는데 유해

물질 사용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으나, 유해방오도료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표] 유해물질별 사용기준 예시

유해물질	사용기준
석면	모든 선박에 석면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 설치 금지
오존층파괴물질	모든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 설치 금지
폴리염소화비페닐 (PCB)	모든 선박에 폴리염소화비페닐을 포함하는 설비의 신규 설치 금지
유해방오도료	1. 모든 선박에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의 사용 금지 2. 신조선 또는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신규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를 것

다만, 제정안에서는 안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 제정안 목적 달성을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둘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해물질 관련 검사 절차 규정) 유해물질 관련 선박검사 절차 및 제재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표] 유해물질 관련 선박검사 절차

유해물질목록 작성·검인·비치 (안 제8조)	정기검사 (안 제10조)	국제유해물질 목록증서 발급비치 (안 제10조)	임시검사 (안 제11조)
· 유해물질목록 작성·검인 후 선박에 비치	· 유해물질목록의 일치 여부를 검사·확인	· 정기검사 합격 후 발급	·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변경교체 등
(작성) 선박소유자 (검인) 주관청	(검사신청) 선박소유자 (정기검사) 주관청	(증서발급) 주관청 (증서비치) 선박소유자	(검사신청) 선박소유자 (임시검사) 주관청
(벌칙) 제29조제1호 목록 작성·검인 위반시 (과태료) 제32조제1항제1호 목록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 제29조제4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제32조제1항제4호 검사 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제29조제4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먼저, ‘유해물질 목록’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박 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와 같은 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신조선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존선의 경우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존선의 경우 선박도면, 장비 설명서 등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한 이후 육안·표본 검사 등을 통해서 유해물질목록이 작성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정기검사의 경우 안 제8조에 따른 선박 내 유해물질목록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인 5년(안 제13조)이 만료한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가 발급되는데, 재활용 협약이 발효되면 기항하는 항만의 정부가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유효한 증서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기검사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짐.

□ 다만,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기검사의 목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기검사의 목적, 즉 법률안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박의 유해물질 사용 및 관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경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선박재활용 절차

1)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

가. 제정안의 내용

- 본 제정안 제3장의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
제16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조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에 관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의 정하는 시기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영업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갱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인증, 제17조제3항의 갱신, 제1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6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근로 안전 또는 환경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선박재활용시설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의 재활용을 시작하기 30영업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10영업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승인을 한 경우, 선박재활용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사실을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선박재활용업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 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 안 제16조는 선박재활용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 따르면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중간에는 중간인증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재활용시설에서의 선박의 해체작업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제정안은 인증이 완료된 재활용시설에서만 선박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인증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규제를 위한 인증과 진흥을 위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인 성격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증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런데, 제정안의 경우 인증을 받은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하는 선박의 대상, 그리고 인증의 기준 모두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하위 법령에서 인증기준의 주요 심사 항목으로 선박재활용시설의 관리,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환경보호 준수 등의 사항을 규정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서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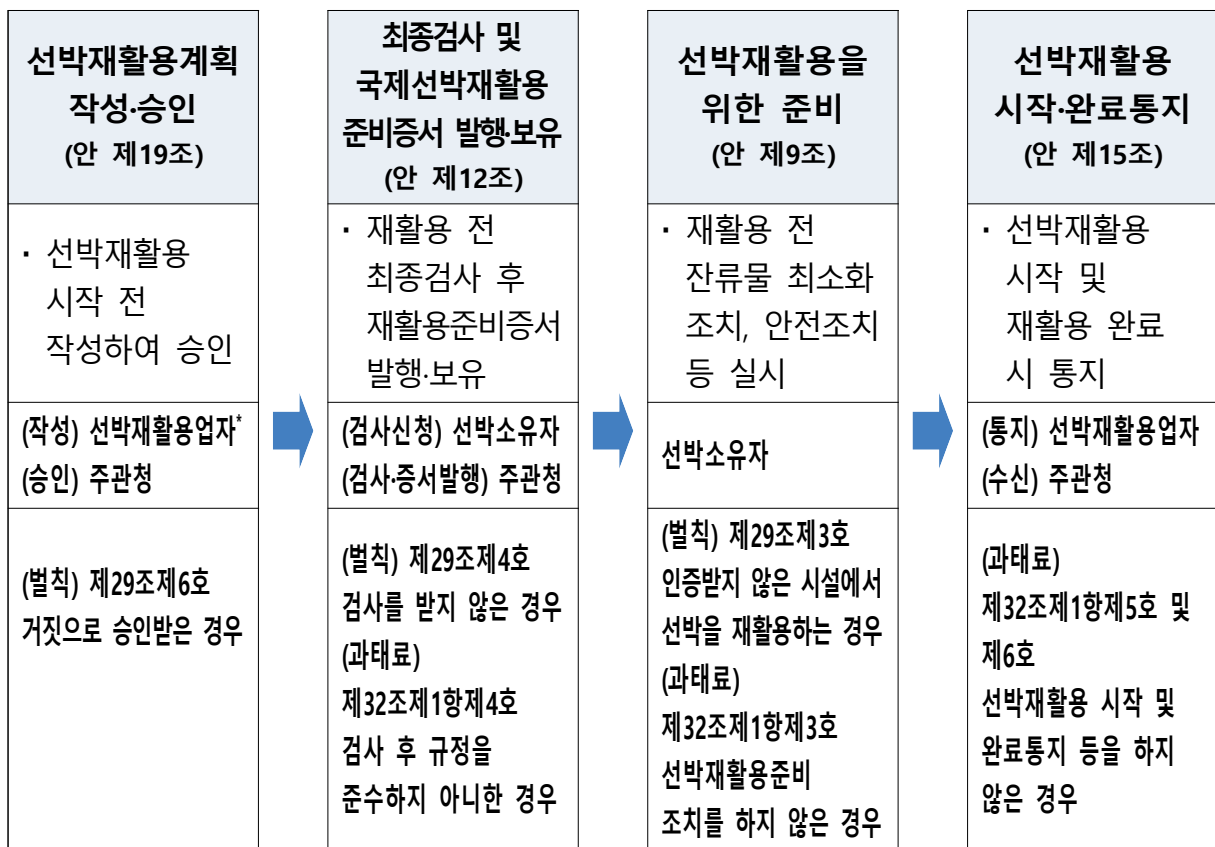
2) 선박재활용 절차 마련

가. 제정안의 내용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안 제16조·17조), 선박소유자가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선박

재활용을 요청하면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안 제19조), 선박소유자는 선박재활용이 시작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고(안 제12조),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

[표] 선박재활용 절차



* 선박재활용업자는 법안 제16조에 따라서 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아야 함

나. 검토의견

□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 국제협약 부속서 제8규칙제6호에 따르면 선박재활용을 실시하기 전 재활용에 관한 승인을 주관청이나 주관청이 인가한 조직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고, 제9규칙에서는 선박재활용 계획의 작성방법 및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용해 안 제19조에서는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의 재활용을 시작하기 전 선박재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을 한 경우 선박재활용업자에게는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에게는 승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선박재활용 계획에 대해 주관청이 인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서는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작업계획 및 신고와 본 제정안의 선박재활용 계획 및 승인 절차 간 중첩 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안 제19조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상 규정과 유사하므로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재활용 계획은 유해물질의 제거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 신고와는 그 목적에 차이가 있고, 작업 장소에 있어서도 선박재활용법안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을 한국에서 해체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설비를 갖춘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와 구별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500톤 이상 외항선의 경우 두 법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생기는 비효율이나 이중규제로 인한 불편이 없는지 관련 업·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선박재활용 계획 및 선박해체 신고의 비교

	선박재활용법안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범위	적용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 모든 유조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선종	▶ “선박”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 “유조선”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해 건조 또는 개조된 항해선 ▶ “선박”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역	▶ “국제항해(원양구역)”	▶ “국제항해(원양구역) 및 국내항해(평수·연안·근해구역)”
작업장소	▶ “선박재활용시설”로 인증받은 시설(주로 조선소 중 해체시설)		▶ “해양시설(건조·수리 및 해체 시설)”(조선소, 전국 186개소 운영 중)
유사문	▶ 19조(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 20조(출입검사) 및 27조(실태조사)		▶ 111조(선박해체 및 작업계획서 신고) ▶ 115조(출입검사·보고 등)
목적	▶ 선박의 건조부터 해체까지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정기·임시·최종검사, 재활용시설 인증 및 재활용계획 관리		▶ 선박 내 오염물질의 사전 제거 및 유출대응 계획 마련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관리
관리물질	▶ “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예) 폐유, 폐기물, 석면, 유기화학물 등		▶ “오염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 자료: 해양경찰청

[표] 국적선의 선박해체 관련 적용 법률 비교

구분		국내해체	비고	해외해체
500톤 이상	내항선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해당국 법률 적용
	외항선	선박재활용법	· 선박재활용 사용계획 승인 ·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500톤미만	내항선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외항선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 (최종검사) 안 제12조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최종검사를 받도록 하고, 최종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최종검사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로 안 제10조, 제11조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와는 그 성격이나 검사 시기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문 순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등)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선박소유자는 최종검사를 받고 재활용준비증서를 발행 받은 이후의 조치로 안 제9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재활용 전 잔류물 최소화,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또한 선박재활용이 이루어지기 전 환경에 해가 되는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재활용해야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인증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한” 선박재활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선박재활용을 하려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국제협약 부속서 제24규칙은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최초통지와 보고 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5규칙은 선박재활용 완료 후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용하여 안 제15조는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관청이 선박재활용의 시작과 완료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선박재활용의 과정이나 방법 등을 적시에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규정은 선박 재활용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문 순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감독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20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선박의 유해물질목록 및 그 밖에 증서가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2조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하여, 안 제23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소유자나 선박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선박 관련 유해물질 등 정보와 선박재활용 실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장 감독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목록이 제8조에 적합하게 작성 및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반 사항이 식별되었거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한 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국선박의 유해물질목록 및 그 밖에 증서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확인
2.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선내육안검사 등 필요한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정밀한 점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

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영업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영업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의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선박 관련 유해물질 등 정보, 선박의 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선박재활용 실시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출입검사 등) 안 제20조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국제협약과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 취지로 보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유해물질목록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하였으면 개선을 명하고, 선박소유자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항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반사항이 식별되었거나 다른 당사국 으로부터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재활용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유사 입법례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선박재활용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선박해체시설)에 해당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에서도 출입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련 업·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유사 입법례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삭제
 5. 삭제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상청소업을 하는 자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항만국통제) 국제협약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①선박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항구나 해안 터미널에서 해당 정부의 검사관에 의해 국제협약의 준수를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②체약당사국들은 국제협약 위반사항 식별 등 국제협약의 조항들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21조는 이러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임.

유효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확인,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사,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관의 선내육안검사 등의 확인·점검 절차를 거치고,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유사 입법례로 「선박평형수 관리법」에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국 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안 제22조는 선박소유자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지적되지 않도록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과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명, 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로 「선박안전법」에서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 항만당국의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선박명, 총톤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선박안전법」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보고 의무 등) 국제협약 부속서 제23규칙은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작업자의 안전, 사람의 건강, 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직업병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3조는 이를 수용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소유자나 선박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선박 관련 유해물질 등 정보와 선박재활용 실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임.

- 구체적으로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화재·폭발·파손 등 사고 발생, 선박재활용 근로자의 안전·건강에 지장이 발생할 상황 등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5) 보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26조는 이 법에 따른 검인, 검사, 증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안 제27조는 국제해사기구에 보고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재활용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2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업무의 위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장 보칙
제24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안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5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또는 재검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

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선박재활용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에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선박재활용시설에 관한 정보
2. 연간 선박재활용의 발생량
3. 연간 선박재활용의 처리 실적
4. 위임 또는 위탁된 조직이나 검사원과 그의 의무 및 권한
5. 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
6.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취해진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검사 등의 대행) 국제협약 부속서 제10규칙에서는 협약에 따른 검사 업무는 주관청의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주관청이 승인한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4조는 선박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이 유해물질목록 검인, 검사 등 관련 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선박검사의 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수행하는 선박검사는 검사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는 대행검사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선박안전법」 등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음.

즉, 「선박안전법」에서도 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참고하여 검사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짐.

[표] 유사 입법례

「선박안전법」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8. (생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9)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1-1장 제1규칙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안 제25조는 외국정부 등이 외국 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 최초검사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를 받은 경우 다시 동일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 「선박안전법」에서도 외국정부 또는 지정 대행기관이 행한 외국선박에 대한 검사 등 업무를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선박안전법」
제66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벌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6장에서는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재활용한 선박소유자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3.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재활용업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벌칙) 국제협약 제10조에서는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이 주관청의
법률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9조는
이를 수용하여 선박소유자와 선박재활용업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다만, 벌칙규정 안 제29조제5호에서는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거짓으로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과태료) 안 제32조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여 벌칙과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른 제재의 차등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다만, 안 제29조제2호에 따르면 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을 위반, 즉 유해물질목록과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있음.

따라서, 유해물질목록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와 작성하고 검인을 받았으나 단순히 비치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하는 등 그 제재 정도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안 제31조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범죄이거나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외국인에게 자유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7) 부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유해물질목록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은 이 법이 시행된 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존선이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유해물질목록의 확인)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시행일) 국제협약 제17조에서는 협약은 발효 요건이 충족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이 2023년 6월 26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25년 6월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법안이 2025년 6월 26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음.
-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국제협약과 법안이 시행된 이후인 2025년 6월 26일 이후에 선박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즉 신조선의 경우에는 본 법안의 규정을 준수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존선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의무이행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 국제협약 부속서 제5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존선은 국제협약 발효 후 5년 안에(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유해물질목록 보유, 정기검사 실시 등을 수행하고,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유해물질목록의 확인)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의무를 이행한 선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 하려는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기존 선박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다른 법률의 개정) 본 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국민권익 위원회는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¹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에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본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추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1

「선박재활용협약」 개요

□ 협약 개요

- (협약명)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 2009년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일명 “홍콩협약”으로도 칭함

- (목적) 선박재활용(해체)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환경보호
- (대상)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
- (발효일자) 협약 발효 요건 충족 후 2년 후 발효('25.6.26.)

< 협약 발효 요건 및 현황('23.6.26. 기준) >

구분	비준국	선복량	선박재활용실적
발효 요건	15개국	40%	3%
현황	22개국	45.81%	3.31%

* '23.6.26. 라이베리아(선복량 15.69%)와 방글라데시(재활용실적 1.37%, 선복량 0.2%)가 선박 재활용협약을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함

□ 협약 주요 내용

- 선박은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정부의 검사를 받은 후 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함

* 신조선은 협약 발효 이후 즉시 적용, 현존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후부터 적용

- 재활용 예정 선박은 선박의 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 가능
-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그 당사국의 검사관이 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첨부2

「선박재활용협약」 의무사항 및 국내법과의 연관성

제1장 일반	유사 국내법
✓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 (적용제외 선박) ▲군함·해군보조함·국가소유 비상업 선박, ▲사법 통제권하에 있는 해역에서만 평생 운항하는 선박	없음. 제정 필요
제2장 선박에 대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유해물질목록 선상 비치(신조선: 즉시, 현존선: 5년이내) ✓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 ✓ 재활용 행위를 하기 전에 재활용준비 승인 ✓ 선박재활용시설은 선박재활용계획 마련 ✓ 선박재활용시설 인가당국이 선박재활용계획 승인 ✓ 유해물질목록 국제증서(유효기간 5년) 발급	없음. 제정 필요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선박재활용시설 인가 및 인증서(유효기간 5년) 발급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시설 ★공유수면법 점사용허가
✓ 작업자·인근주민 안전 등을 위한 관리 체계·절차·기술 수립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영향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 재활용시설 계획 준비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해체 작업계획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절차 마련·이용 * 열작업 조건·절차 수립 및 점검, 폐쇄된 공간 출입 조건·절차 수립 및 점검, 기타 직업병 방지 절차, 환경위험 물질 유출 및 배출 방지 절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 모든 유해물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거 보증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 평가, 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
✓ 유해물질 관리·제거에 대한 친숙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인 자격·업무
✓ 제거된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안전·친환경적인 관리 보증	
✓ 제거된 폐기물은 공인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이송	★해양환경관리법 오염물질 수거·처리 ★공유수면법 금지행위 ★폐기물관리법 분석기관, 보관시설
✓ 비상 대비와 대응계획 수립·유지 * 훈련, 응급상황시 필요한 장비와 절차 마련, 정기적인 훈련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시설 비상오염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산물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 작업자에게 개인보호장구 등 제공 및 친숙화 보장 * 머리·안면·눈·손·발·호흡기·청력 보호장비, 방사능 오염 예방 도구, 낙하 예방, 의복 등	★산업안전보건법
✓ 사건·사고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고	
제4장 보고 시 요구 사항	유사 국내법
✓ (선주) 재활용 의도 통보 및 재활용준비 국제증서 발급	없음. 제정 필요
✓ (선박재활용시설) 의도 통보 후 선박재활용 시작 보고	
✓ (선박재활용시설) 완료 보고	